

---

「코로나19(COVID-19)」 관련

#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(10판)

---

2022. 6. 28.





## ‘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(10판)’ 개정 내용

- (직무교육 유예 종료) ‘20.2.4. 이후 유예(과태료 면제)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’22. 6. 30.자로 종료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’22. 7. 1. 이후라면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까지 직무교육을 이수  
\* 예시) ’22. 6. 1. 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’22. 9. 1.
-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’22. 6. 30.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 일자가 ’22. 7. 1.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
- (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) ‘20. 9. 8.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 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’22. 6. 30.자로 종료
- (실시간 화상교육 기간 연장)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 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
- (모바일교육 기간 연장)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(모바일 교육)’ 가능 기간을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
  - 정부는 코로나19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’20. 2. 23. 심각 단계로 격상 후 현재(’22. 6. 28.)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대응 중이며,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(관심)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
\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: [1단계(관심) → 2단계(주의) → 3단계(경계) → 4단계 (심각)]
- (시행시기) ‘22. 7. 1.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

### □ 직무교육

- (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) '20.2.4. 이후 유예(과태료 면제)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'22. 6. 30.자로 종료
  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\*이 '22. 6. 30.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
    - \* 안전·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(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)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
↳ 예시) '22. 6. 1.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'22. 9. 1.
  -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'22. 6. 30.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 일자가 '22. 7. 1.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

### 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

- (근로자)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·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,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
- (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) '20. 9. 8. 이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'22. 6. 30.자로 종료

### □ 기타 사항

- (실시간 화상교육\*) 사업주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,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
  - '22. 6. 30.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

※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

\* '실시간 화상교육'이란 PC,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·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, 강사·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

- (모바일교육\*) 사업주가 근로자·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 「안전보건 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29호)」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추고,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\*\*를 하는 경우, '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(모바일교육)' 가능
  - '22. 6. 30.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모바일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 해제시까지 연장
- ※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만 모바일교육이 가능하며,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경우 모바일교육은 불가능
- \* '모바일교육'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,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
- \*\*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
  - 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'작업 중 수강금지', '운전 중 수강금지' 내용 공지할 것
  - 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출 것
  - ③작업 또는 운전 중에 교육 수강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교육을 중단하고, 모바일 교육에서 배제할 것
  -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
- (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) 고용노동(지)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'22. 6. 30.까지 유예
- (교육일정 조정)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,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
- (평가시 불이익 금지)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

## [참고] 교육대상별·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시간

구분	신규교육	정기교육 / 보수교육	작업내용 변경 시 (1회)	특별교육 (1회)
근로자	일반	▶ 8시간  ▶ (일반) 분기별 6시간 ▶ (사무직) 분기별 3시간	▶ 2시간	▶ (일반) 16시간 ▶ (단기간·간헐적 작업) 2시간
	일용	▶(일반) 1시간 ▶(건설업) 4시간	▶ 1시간	▶ (일반) 2시간 ▶ (타워크레인 신호 업무) 8시간
	관리감독자	-	▶ 연 16시간	-
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	안전보건관리 책임자	▶ 6시간 이상	▶ 6시간 이상(2년 주기)	-
	안전관리자/ 보건관리자	▶ 34시간 이상	▶ 24시간 이상(2년 주기)	-
	안전보건 관리담당자	-	▶ 8시간 이상(2년 주기)	-
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	일반	▶ 2시간	-	▶ 16시간
	단기·간헐	▶ 1시간	-	▶ 2시간

## □ 공통사항

### ○ 인원 기준

-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(22. 4. 18.)로 행사·집회 모임 인원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 시 인원 제한기준 해제

\* 단, "시설 내 밀집도 완화" 원칙 하에, ❶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❷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❸칸막이 설치 또는 ❹시설 특성에 맞게 교육생 간 충분한 간격 유지 환경 조성 등을 사업장(교육기관 포함) 특성에 맞게 적용

### ○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

- 교육장, 공용물품,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(일 1회 이상) 및 환기(일 3회 이상)
-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(손 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예절 등)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

### ○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(붙임1)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

-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(오전·오후 등)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
-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(붙임3)에 따라 신속히 조치

### ○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, 상시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, 환기 설비를 가동

- 창문 환기 시 창문을 동시(외기, 복도)에 열어 환기량을 최대로 할 것

### ○ 냉·난방기(공기청정기 포함) 사용 시, 수시로 환기 실시

\* 냉난방기, 공기청정기 사용 시 실내공기 재순환을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 환기하고 풍향 및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

## □ 안전보건교육기관

- **(사전안내)**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(붙임4)
- **(유증상자)** 교육 중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교육생(유증상자)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체없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(만 60세 이상)에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
- **(확진자)** 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사업장을 소독하고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교육생들에게 공지 및 사업장 내 확진자·접촉자 조사·관리 기준(붙임3)에 준하여 관리
  - \*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접촉자는 확진자의 동거인, 확진자가 감염 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를 의미하며, 이외 시설·개인의 접촉자는 보건소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기관 자체 매뉴얼에 따르거나 자율 관리
- **(교육생 출결 관리)** 교육기관은 교육생인 확진환자가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(교육 수강)으로 인정
  -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한 교육생으로서 그 검사 결과가 음성인 교육생은 교육에 복귀하도록 조치(미복귀 시 출석으로 미인정)

### 3

## 감독·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

- (원칙)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
- (심층 인터뷰 등)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(안전·보건조치 등)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(대피요령 등)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\*
  - \*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

- 심층 인터뷰\*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,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\*\* → 과태료 부과

\*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,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

\*\*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,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

### 4

## 시행시기

- (시행시기) '22. 7. 1.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

## 붙임 1

##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

## □ 사업장(교육기관) 개요

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			
주 소		연 락 처	
대 표		근로자수(남/여)	명( / )

## □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

항목		점검결과	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(필요시 별지 활용)
훈련 환경 및 방역 상태	1) 예방안전수칙(코로나 19 예방수칙)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2) 교육생 밀집도, 환기상태, 교육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마련하고 안내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의심증상 모니터링 등	1) 발열(37.5°C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교육생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위생 · 청결 관리	1)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, 마스크 착용 준수, 손세정제 비치, 개인용 컵·식기·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2)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, 식사 시 대화 자제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3)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, 매일 3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4)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,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
※ 점검결과 “아니오”의 경우 **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**

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
-------------------

2022 . .

사업장명(교육기관) 명:

성명

(인)

대표자명:

성명

(인)

### 〈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〉

#### ○ 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

- (법적근거)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- (행정명령기간)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“경계·심각”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- (과태료 부과) 계도기간 1개월('20.10.13.~'20.11.12.)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
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,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
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50만원, 2차 100만원, 3차 이상 200만원)

#### ○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

- (착용 의무) 실내 전체 및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(참석자),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·스포츠경기(관람객) 시 마스크 착용
  - \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- (관리 의무)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(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)

#### ○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

- 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‘의약외품’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밀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, 그 외 천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, 전자식 마스크 가능
  - \*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
  - ※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, 넥워머,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- 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
  - \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#### ○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상황

예외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</li> <li>•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</li> <li>•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</li> </ul>
예외 상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</li> <li>•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</li> <li>•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</li> <li>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</li> <li>•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</li> <li>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</li> <li>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</li> <li>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</li> <li>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</li> <li>•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</li> <li>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</li> <li>•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</li> </ul>

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방안

- 확진자 본인이 사업장 방역관리자에 즉시 신고
- 확진자 발생 확인 즉시, 방역관리자는 확진자의 복무관리자에 통보 조치, 사업장 내 공지 및 접촉자 조사 실시
- 확진자 업무복귀 기준 안내
  - 7일 격리 후 3일간은 주의기간으로, 수칙을 지키며 출근 가능
    - \* 주의기간 수칙 :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 모임은 자제

**<접촉자 대상자별 관리방안>**

■ 사업장 내 접촉자 조사·관리 우선순위

우선순위	접촉자 조사 대상
1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확진자와 동일 공간(기숙사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하는 구성원</li> </ul>
2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확진자의 증상 발생일(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)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</li> <li>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3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동일 공간(부서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

※ 상기 사항은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

**1순위 : 확진자와 동일 공간(기숙사 또는 숙소)에서 생활하는 구성원**

① 확진자는 별도 격리공간으로 즉시 분리

- 확진자가 다수일 경우, 확진자끼리 동일공간 격리는 가능

② 확진자가 '기숙사 동일 호실 생활자'를 동거인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보건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

- 기숙사의 동일 호실 생활자는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보건소의 '조사대상 접촉자'임

③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

- 수동감시 : 관할 보건소에서 수동감시 대상자에게 수칙을 안내하고 준수를 권고하고, 수동 감시 대상자는 수칙을 자율 준수하는 관리 방식

**2순위 :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, 15분 이상 대화 등**

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⇒ 유증상 시 동네 병·의원 검사·치료

②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, 인지시 및 인지후 6일차의 총 2회 실시

③ 인지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결과 음성이면 출근 가능

### 3순위 : 동일 공간(부서)에서 근무하는 구성원

- ① 확진자 격리기간 동안 증상 관찰 ⇒ 유증상 시 동네 병·의원 검사·치료
- ② 신속항원검사(개인용) 실시
- ③ 증상 관찰하면서 출근 가능

#### 접촉자 대상자별 검사방안

##### ○ 만 60세 이상 또는 검사대상 지정 문자 받은 자\*

\*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, 해당 확진자로부터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은 자도 해당

- PCR 검사 우선순위로,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

##### ○ 만 60세 미만

- 증상이 있는 경우, 동네 병·의원에서 의사 진료 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PCR 검사 실시

\* 의료기관 자체 PCR 검사가 불가한 경우, PCR 검사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발급받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 검사 실시

- 증상이 없는 경우,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실시

-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, 지체없이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또는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확인 전까지 자택 대기

#### 【주의사항】

-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착용,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
-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, 자차 등을 활용하여 이동

-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, 필요 시 주기적으로 반복 검사

※ 특히, 만 60세 이상 고령자, 고위험 기저질환자, 면역저하자의 경우 조기 진단·치료가 중요하므로, 진단검사 적극 실시 독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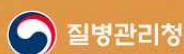
일반국민 행동수칙

질병관리청 2020.11.19

## 코로나19 일반국민 행동수칙 10 인플루엔자 예방

- ①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
※ 일반관리 시설, 대중교통, 집회, 시위장, 의료기관 약국,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, 종교시설, 실내 스포츠 경기장, 고위험 사업장, 지자체에 신고·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·행사에서는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
- ②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
- ③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
- ④ 사람과 사람 사이, 두 팔 간격 2m(최소 1m) 거리두기
- ⑤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- ⑥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
- ⑦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·소독하기
- ⑧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이나 호흡곤란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
- ⑨ 매일 본인의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확인하기  
※ 다양한 주요 증상 : 발열( $37.5^{\circ}\text{C}$ 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두통, 인후통, 후각미각 소실 등 그 외에 피로, 식욕감소, 기래, 소화기 증상(오심·구토·설사 등)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 막힘 등
- ⑩ 필요하지 않은 여행 자제하기

## □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



2020.11.19

# 코로나19·인플루엔자 동시유행 시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

## 일반수칙

- 실내 시설,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
- 꼭 필요한 경우(병원 방문 등) 외 외출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-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기

## 가정 내 주의사항

-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(2m)를 지키기  
\* 특히 고위험군(영유아·고령자·만성질환자 등)과 접촉 피하기
- 개인물품(개인용 수건·식기류·휴대전화 등)은 따로 사용하기
-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·소독하기

##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발생 시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,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받기
- 의료기관에 방문하려면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 예약하기
- 선별진료소,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,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

##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 주의사항

-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서 발열 등의 임상증상 확인하기
-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열이 떨어지면, 24시간 동안 추가로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원, 등교, 출근하기
-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,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기

## □ 마스크 착용[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]



2021.4.26.

# 마스크 착용!

##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



★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 
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.

### “마스크, 반드시 착용하세요!”

실내

- 상시 마스크 착용

실외

-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 
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-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



### 마스크,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!

올바른  
마스크 착용법

- ✓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
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 
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착용 가능한  
마스크의 종류

- ✓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 
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 및 수술용 마스크
- ✓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벨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 
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
## □ 올바른 환기 카드 뉴스[올바른 환기 방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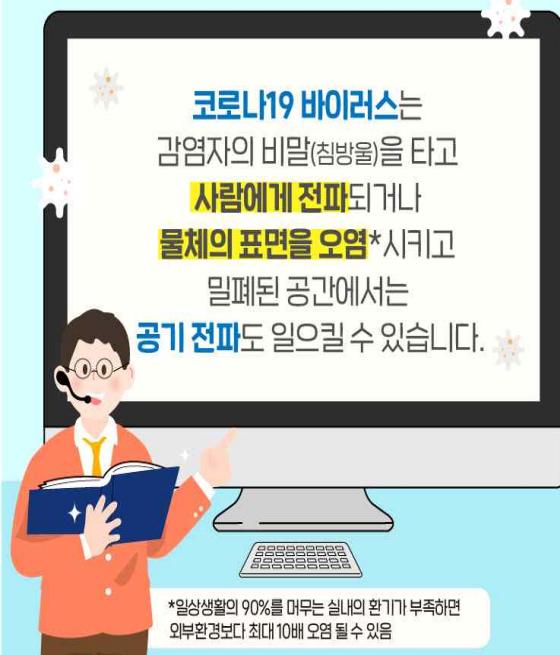
2021.07.05.

질병관리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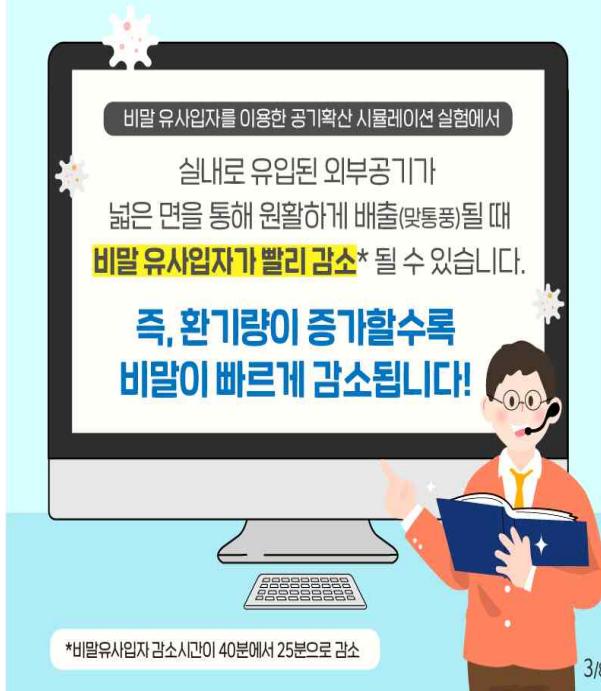
2021.07.05.

질병관리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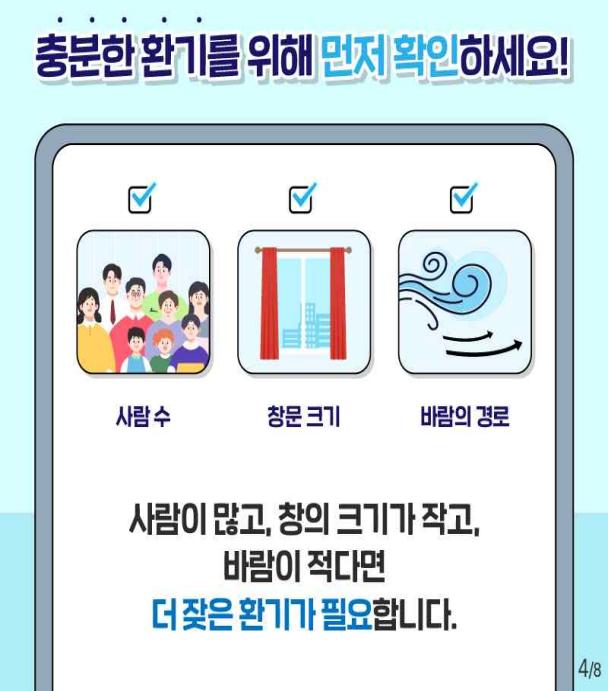
2021.07.05.

질병관리청



2021.07.05.

질병관리청



2021.07.05.



## 기본 환기 3원칙!



### 1일 최소 3회(10분) 이상 창문 열어 환기 하기

\*밀집도가 높은 공간이라면 더 자주 환기를 해주세요



###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 동시에 여러 개 열기

\*밀집 풍을 유도해 산선한 공기가 실내에 들어오게 하고 창문을 넓게 열기 어려울 경우 지속적 흡기를 시킵니다.



###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 하기

\*냉방 중에 환기하지 않으면 비말이 재순환되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집니다.

2021.07.05.



## 하절기 에어컨 가동 시 3원칙!



### 에어컨 가동 시 최소 2시간마다

### 1회(10분 이상) 환기하기

\*밀집도가 높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은 더 자주 환기 필요



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(천장 또는 벽)으로  
풍량은 가능한 얕하게 설정하기



### 대중교통, 공동이용 승합차 운영 시 창문을 지속적으로 조금 열어두기

\*차량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

5/8

6/8

2021.07.05.



## 창문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어떻게 할까요?

환기는 여러 개의 창문을 열어 맞통풍 시키는 것이 좋지만  
창문이 없는 지하 등에서는 다음을 지켜주세요!

-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(강의, 노래 등)을 자제합니다
- 매무는 동안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
- 방문 시간을 가능한 짧게 합니다
- 환기설비가 없는 경우 주방 후드나 욕실 배기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합니다

이 때, 선풍기를 활용하여 정체된 공기가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 
흐르도록 하여 환기를 촉진합니다

7/8

2021.07.05.



밀폐된 공간에서 감염자에 대한  
노출시간이 길어질수록  
감염 위험\*이 높아집니다

여름철 나와 우리를 위한  
**올바른 환기방법을  
기억하세요!**

**기본 환기 3 원칙  
에어컨 가동 시 3 원칙**

\*노출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면 감염위험이 2.2배 증가하고 6시간으로 늘어나면 3.4배 증가합니다.

8/8